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별내선(8호선연장) 1공구 건설공사)

- 점검일시 : 2022.01.13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, 이상현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1) 1-1구간 슬래브 상부 작업장으로 이동을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, 일부 안전난간이 망실되어 있고
 - 일부 통로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난간이 돌출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간에 충돌, 간섭되고 있어 이동간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
 - 또한, 슬래브 동바리 해체작업(9span)구간은 작업자 통로가 협소하고 추락우려가 있어 안전통로를 설치지연예정구간에 일부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속히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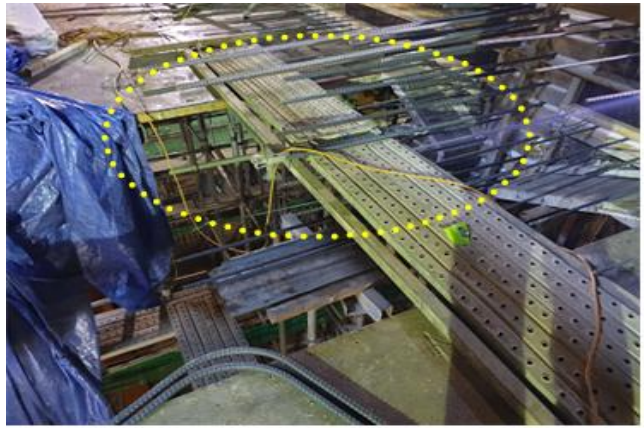
- 2) 환기구 등 상부 작업구간은 근로자 출입통로 및 굴착단부 안전시설이 미흡하므로 조치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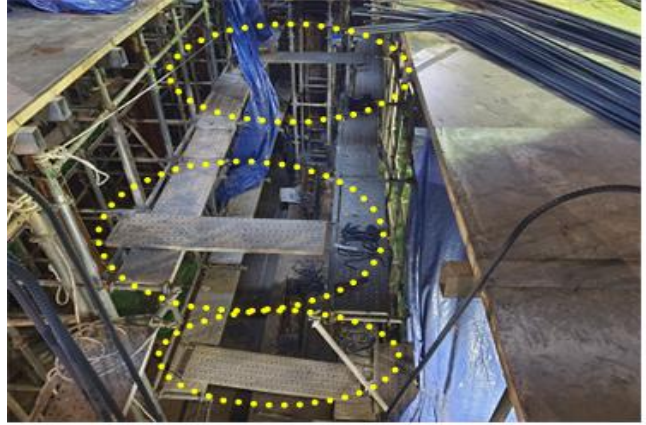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3) 1-1구간 상부 슬래브 작업예정구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
- 일부 구간에 설치해 있는 작업통로는 안전난간 미설치, 철근도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작업자 사용흔적(가설전선 거치)이 있으며,
- 슬래브 하부 구간 작업통로에는 작업발판 미고정, 생명줄 미설치 등으로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으니 조속히 추락재해예방 조치를 실시하고,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후속 공종을 진행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4) 정거장 슬래브 되메우기 작업은 복공판 개구부 주변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대 고리체결 등 추락 안전조치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

- 정거장 환기구 개구부는 추락 및 낙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정비 등 조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5) 자재 반출작업장 진입을 위해 작업 차량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360도 유턴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, 관리하기 바람,

- 자재 적재차량이 유효높이 이상으로 자재를 적치한 후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, 작업자가 인접한 평탄하지 않은 도로를 이동 중으로 자재 전도



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장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(중량물 취급 등)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), 제171조(전도 등의 방지)

